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4. 5.(월) / 총 4매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 공간정보 제도과	담당 자	• 과장 유승경, 사무관 정은정, 주무관 김은우 • ☎ (044) 201-3481	
보도일시	2021년 4월 6일(조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도 4. 5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, 관리·감독 강화

- 측량 정확도·안전성 향상...8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-

-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‘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’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민간에 위탁된 ‘측량기기 성능검사’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·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」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지금까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」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,
 -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(전국 27개 업체, '21.2월 기준)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해왔다.

- 또한,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왔다.
- 그러나 총리실 주재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의 관리·감독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법률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하위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.
- 이번에 개정된 「공간정보관리법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하였으며,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하였다.
 -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,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히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정은정 사무관, 김은우 주무관(☎ 044-201-348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**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**

기 계 명	검사주기	성능검사기간
트랜싯(데오드라이트)	3년	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 료일까지
레벨	3년	
거리측정기	3년	
토털 스테이션 (total station:각도·거리 통합 측정기)	3년	
지피에스(GPS) 수신기	3년	
금속관로 탐지기	3년	